

소장

원고 별지와 같음  
피고 인천광역시

인천 논현(2)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 등

청구취지

1. 주위적으로,  
피고가 2002.1.30.자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, 고잔동 일원 2,543,054.9㎡에 대하여 한 인천 논현(2)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  
예비적으로,  
위 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 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

1. 원고적격  
원고들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 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하고 있고 위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지구내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.
2. 피고의 고시처분 내용  
가. 인천광역시장은 2002. 1. 30.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논현(2)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,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(지구단위 계획 포함)을 승인하고 고시하였습니다.  
나. 주요 고시내용 및 실시계획승인  
(1)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 
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, 고잔동 일원 2,503,925㎡를 2,543,054.9㎡로 변경  
(2) 택지개발계획변경  
수용인구를 59,992명에서 54,813명으로, 건설호수를 20,687호를 18,901호로 변경하고,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1블럭부터 16블럭까지 면적, 건설호수, 수용인구, 평균평형, 층수, 용적율에 관하여

변경

(3)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6. 12. 31.

(4)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

- 주택건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계획, 상업용지 용도 계획
- 각 용도별 건축물 밀도 및 높이 계획

### 3. 처분의 위법

가.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에 허위자료

를 인용하거나 환경부, 인천시 등의 검토 협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

성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하자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근거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한 것입

니다.

### 나. 지역적 특성

(1) 이진 인천 논현(2)택지개발 예정 지구는 남동공단과 바로 붙어있고 남동공단에는 2001.9. 현재 식품

제조업체 59개, 석유화학업종 417개, 폐기물 처리업체 2개, 중 소형산업 폐기물 소각로 204개(2002.

8.) 등의 악취 및 대기오염원이 682개 이상 존재하고 그 외 인쇄, 제지, 목재업체 등까지 총 1,000여개

의 주요 악취 및 대기 오염원 업체가 있으며, 또한 이진 택지 개발예정지구와 남동공단 주변에는 일반

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 있어 이곳에도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총 119개나 있고 그 중 유해 대기 배

출업소는 총 41개업체가 됩니다. 그리고 향후 이진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세워질

예정입니다.

(2) 이진 택지 개발 예정지구 외곽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소래선 도로가 기설치 되어있고 택지

내 대로, 광로 및 수인선 철도 등의 도로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광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소래 I·

C로 연결토록 되어 있어 산업용 중,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소음, 진동 및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

고 있습니다.

(3) 뿐만 아니라 2.5km 범위 내에 송도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어 이 지역의 교통량이 택지내의 소음, 진

동 및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다. 구체적인 문제점

(1)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지시 미이행 대한주택공사의 실시계획승

인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인천광역시, 남동구청, 국방부가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으로

인하여 발생할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제시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

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하거나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

습니다.

(2)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

대한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작성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, 방법,

내용 등을 축소하거나 은폐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내용적으로 대단히 부실하여 환경평가서로서의

기본요소를 갖추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

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을 받았습니다.

4. 타지역의 예

이권 인천논현(2)택지개발예정지구와 같이 인근에 공단이 위치한 시화공단으로 1km정도 떨어진 시흥

정왕 지구의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악취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면적을 줄이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대

책을 마련했음에도 환경부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자 지구지정을 취소하였고, 녹산공단 주변

의 부산 송정 지구도 2회에 걸친 사전 환경성 협의가 있었으나 녹산공단의 악취를 이유로 환경부가 택

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두 차례 동의하지 않자 택지지구지정 추진을 포기한바 있습니다.

5. 피고가 2002.1.30.자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, 고잔동 일원 2,543,054.9㎡에 대하여 한 인천논현

(2)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, 방법,

내용 등에 있어 축소하거나 은폐 또는 허위로 작성된 그리고 인천지방환경관리청, 인천광역시, 남동구

청, 국방부 등의 보완지시에 따라 모두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이

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입니다.

이권 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은 이 같은 재량권남용이 커서 중대하고

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므

로 판단되  
어 이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